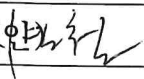


# 제79회 임시이사회 의사록

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

일 시	2018. 4. 5(목) 10:00	기록자	지일철 
장 소	서울시복지재단 5층 회의실1		
재적이사	9명(한인영, 남기철, 한영희, 박대우, 이명자, 김혜란, 이미성, 장지현, 박은숙)		
출석이사	7명(한인영, 남기철, 한영희, 이명자, 김혜란, 장지현, 박은숙)		
참여자	김현대, 최우영, 나드철, 서울시(안승만, 열광, 박경훈, 시려)		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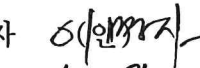




의 결 사 항

의안번호	제 목	의결내용	소관부서
302	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	원안의결	경영기획실
303	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	원안의결	경영기획실
304	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	수정의결	경영기획실

회 의 내 용 : 별 첨

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서명함.

2018년 4월 5일

이 사 장	한 인 영	
이 사	남 기 철	
이 사	한 영 희	
이 사	박 대 우	(인)
이 사	이 명 자	
이 사	김 혜 란	
이 사	이 미 성	(인)
이 사	장 지 현	
이 사	박 은 숙	
감 사	배 형 우	(인)
감 사	성 춘 일	

# 제79회 임시이사회 회의내용

## 1. 회의개요

- 회 의 명 : 제79회 임시이사회
- 기 관 명 :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
- 일시 및 장소 : 2018. 4. 5(목) 10시, 재단 5층 회의실1
- 출석현황 : 재적이사 9명, 참석이사 7명
  - 재적이사: 한인영, 남기철, 한영희, 박대우, 이명자, 김혜란, 이미성, 장지현, 박은숙
  - 출석이사: 한인영, 남기철, 한영희, 이명자, 김혜란, 장지현, 박은숙
  - 감 사 : 성춘일
  - 배 석 자 : 재단(지일철, 김현대, 최우영, 나도철), 서울시(안승만, 박정훈, 서려)
- 안건목록

의안번호	건 명	의결내용
302	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	원안의결
303	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	원안의결
304	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	수정의결

- 기록부서 : 경영기획실

## 2. 논의결과

### ① 의안번호 302호 <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>

- 안건 주요내용
  -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.
- 참석자 발언요지
  - 재단은 한국복지분권협의회(전국 복지재단 7 기관 가입) 2018년 회장기관임.
  - 공동워크숍 진행을 위해 회장기관인 재단이 회원기관으로부터 부담분을 송금받아 집행하는 형태로 추진하게 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임.
- 논의결론 : 원안의결

## ② 의안번호 303호 <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>

### 안건 주요내용

-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을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.

### 참석자 발언요지

- 정관 일부개정안은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서 개정 요구한 사항으로 2017년 「투자·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후속조치」와 2018년 「투자·출연기관 정관 표준안」에 따라 추진하는 것임.
-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별 정관내용이 상이하여 미흡한 부분은 수정·보완하고, 공통기준을 적용하고자 함.

### 논의결론 : 원안의결

## ③ 의안번호 304호 <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>

### 안건 주요내용

-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함.

### 참석자 발언요지

- 2017년 단체협약 체결결과와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(육아휴직) 제3항을 반영하여 근속승진 조항을 신설하고,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급제한 조건을 조정하며,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정년기준일을 조정하고자 함,
- 서울시 차원에서 현재 정년기준일 조정건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며, 최대한 상반기 중으로 검토하여 공통안을 마련할 예정임.
- 근속승진 신설(안 제24조)과 승급제한 조건 조정(안 제26조)은 원안의결하되, 정년 기준일 조정(안 제36조)은 상반기 중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서 공통안을 마련하기로 하여 보류하도록 하며, 차기 이사회에서 재상정하기로 함.

### 논의결론 : 수정의결(제24조 신설 및 제26조 개정사항은 원안의결, 제36조 개정사항은 보류)

### 3. 보고사항

#### ① 재단 내규 개정 사항(5건)

##### 보고 주요내용

###### - 개정 재단 내규명(5건)

: 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내규, 기간제근로자 관리 내규, 보조업무 담당근로자 관리 내규,  
보안업무내규, 사무위임전결 내규

###### - 보고내용 : 개정 사유, 주요 개정내용, 보고절차 등

##### 참석자 발언요지

###### - 특이사항 없음. 끝.